

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(제35조 관련)

1. 일반적 기준

- 가.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, 경험,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(제 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험장비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)
- 나. 시험 신청 시 시험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
- 다.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, 관리자 및 지원인력을 보유할 것
- 라. 비밀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
- 마.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

2. 시험기관별 세부 기준

해당 시험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것

가. 적합성시험기관

ISO 9000시리즈 이상

나. 환경시험기관, 육상시험기관 및 선상시험기관

ISO/IEC 17025의 품질관리체제